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40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40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소62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8.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소 6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41,2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갑1호증 표준근로계약서 중 "연봉 : 26,400,000원(퇴직금포함)으로 한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는지,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납부한 경위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다시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 법률원인이 되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피고가 위 각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에혁준

판사김대규

판사권준범